



2014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보고서



진 천 군

목 차

1.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3
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보고서	9
3.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15
4.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1
5.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27
6.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34
7.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40
8.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46
9.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54

'1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3조,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불우청소년등 관내거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연도 : 1986년 12월 9일
- 조례제정 : 1986년 10월 27일
 - 개정 : 1988. 10. 20 조례 제1092호
1988. 10. 22 조례 제1102호
1992. 4. 29 조례 제1326호
1993. 7. 15 조례 제1374호
1993. 12. 6 조례 제1392호
1996. 12. 31 조례 제1542호
1997. 12. 17 조례 제1576호
1998. 4. 11 조례 제1596호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10. 7 조례 제1671호
2000. 10. 28 조례 제1709호
2003. 2. 12 조례 제1799호
 - 전부개정 : 2006. 8. 22 조례 제1932호
2008. 7. 14 조례 제2017호
2009. 7. 30 조례 제2049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8	6	294	8	6	2	296	

II. 분석결과

1. 총 평

-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정과 불우청소년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대학생 17명에게 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청소년들의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	6	100	6	6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불우청소년들에게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도모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7명)	○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7명)	100%
'13년	○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7명)	○ 청소년장학금 지원 사업(6백만원, 17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 소녀가장과 무직, 미 진 학청소년등 불우청소년들 의 진학 및 직업훈련과 생활정착을 위한 지원	- 청소년(중,고,대학생) 장학금 - 직업훈련 지원금 - 자립정착 지원금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불우청소년등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학업 및 생활정착등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장학금과 자립지원금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습분위기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 지원사업	6백만원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 가정등의 안정적인 학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탄력적인 운영 및 재원확보를 위해 필요함	상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청소년기본법 및 진천군 청소년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및 운용되고 있으며, 청소년육성기금의 예치금 294백만원 및 발생이자 등으로 총당되며 매년 발생이자의 10%이상을 재적립하도록 되어 있고,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등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학업분위기 조성에 사용되고 있음(표 4-1)

(표 4-1)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293	%	299	%	300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285	97	290	97	292	97	
	예수금							
	이자수입	8	3	9	3	8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293	%	299	%	300	%	
	고유목적사업비	4	1	6	1	6	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289	99	293	99	294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모범청소년 및 소년, 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자활을 도모하고 건전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사업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사기양양에 기여토록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14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진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고자 함
- 설치 연도 : 1992년 12월 21일
 - 조성액 : 100,000천원(1998년 조성완료)
 - 조례제정 : 1991. 12. 31일 조례 제1313호
 - 조례개정 : 1994. 5. 6일 조례 제1414호
 - 1998. 9. 23일 조례 제1621호
 - 2001. 6. 13일 조례 제1739호
 - 2003. 12. 31일 조례 제1829호
 - 2006. 8. 9일 조례 제1926호
 - 2008. 7. 14일 조례 제2017호
 - 2010. 12. 16일 조례 제2120호
 - 2011. 6. 30일 조례 제2147호
 - 2012. 6. 25일 조례 제2212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	2	104	2	2	-	104	

II. 분석결과

1. 총 평

- 가정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9명에게 장학기금의 이자수입 중 각각 중학생 100,000원, 고등학생에게 150,000을 지급하여
-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교육 지원을 함으로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을 지향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	2	100	2	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진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에 대하여 일반 장학금과 차별화하여 교육 지원을 함으로 학업 성취도 향상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 자활의식 고양과 가난의 대물림으로부터 탈피하여 자립을 지향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100%
'13년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2백만원, 18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진천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전한 육성	<input type="checkbox"/>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중 중·고등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 중학생 : 100,000원 이내 - 고등학생 : 200,000원 이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연간 계획에 의거 정기적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속 사업을 추진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장학금지원사업	2,200천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2,200천원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 · 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장학기금 : 100백만원(자치단체 출연금)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105	%	105	%	106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03	98	103	98	104	98	
	예수금							
	이자수입	2	2	2	2	2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105	%	105	%	106	%	
	고유목적사업비	2	2	2	2	2	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03	98	103	98	104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가정환경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운용되는 장학 사업으로 존치 필요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14년도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진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진천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설치 연도 : 1995년
 - 조성액 : 500,000천원
 - 조례제정 : 1995. 04. 20. 조례 제1450호
 - 조례개정 : 1996. 05. 16. 조례 제1499호
 1996. 06. 17. 조례 제1505호
 1996. 12. 16. 조례 제1531호
 1997. 12. 17. 조례 제1577호
 1998. 0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6. 04. 12. 조례 제1909호
 2009. 07. 30. 조례 제2049호
 2010. 12. 16. 조례 제212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2011. 03. 15. 조례 제2125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3	15	565	12	15	-3	562	

II. 분석결과

1. 총 평

- 노인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대학 운영
- 노인의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클럽 육성 및 장기바둑대회 운영
-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전통공예 솜씨대회 및 지도자 교육 실시
- 노인복지기금 사업 활성화로 노인대학 운영 확대 요구와 수요자들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 제고
- 기금사업 추진으로 노인 인권신장을 위한 토대 마련
-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 노인복지기금사업 활성화가 기대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5	100	15	1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노인복지기금 사업 추진
- 진천군 노인대학 운영 및 자원봉사클럽 육성, 장기바둑대회 및 전통공예솜씨대회, 지도자교육과 어린이 보호활동 등을 추진하여 노인의 여가생활의 만족도를 제고시켰음.
- 대내외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사업 확대 추진 필요성 제기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 10백만원, 150명 ○ 자원봉사클럽육성 - 1.3백만원, 육성대회 운영 ○ 장기바둑대회 운영 - 0.5백만원, 대회 운영 ○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 0.5백만원, 대회 운영 ○ 지도자교육 - 2.2백만원,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활동 - 0.5백만원,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 10백만원, 150명 ○ 자원봉사클럽육성 - 1.3백만원, 육성대회 운영 ○ 장기바둑대회 운영 - 0.5백만원, 대회 운영 ○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 0.5백만원, 대회 운영 ○ 지도자교육 - 2.2백만원,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활동 - 0.5백만원, 활동 진행 	100%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 10백만원, 135명 ○ 자원봉사클럽육성 - 1.3백만원, 활동비, 교육비 ○ 장기바둑대회 운영 - 0.5백만원, 대회 운영 ○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 0.5백만원, 대회 운영 ○ 지도자교육 - 2.2백만원,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활동 - 0.5백만원, 활동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운영 - 10백만원, 135명 ○ 자원봉사클럽육성 - 1.3백만원, 활동비, 교육비 ○ 장기바둑대회 운영 - 0.5백만원, 대회 운영 ○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 0.5백만원, 대회 운영 ○ 지도자교육 - 2.2백만원, 교육 실시 ○ 어린이보호활동 - 0.5백만원, 활동 진행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의 조성 및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대학 교육 사업비 지원 - 어린이 보호활동 - 들국화봉사단 활동비 지원 - 장기. 바둑대회 - 전통공예 솜씨대회 - 지도자 교육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노인의 복지증진 및 어르신들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발한 노후생활에 기여한바 크다고 봄.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속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노인대학 운영	10백만원	-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
② 자원봉사클럽육성	1.3백만원		상
③ 장기바둑대회운영	0.5백만원		상
④노인전통공예 솜씨대회	0.5백만원	- 노인이 희망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호에 따라 선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금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함.	상
⑤지도자교육	2.2백만원		상
⑥어린이보호활동	0.5백만원		상
합 계	15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 당	없 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 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577	%	580	%	57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562	97	564	97	565	97
	예수금						
	이자수입	15	3	16	3	13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577	%	579	%	580	%
	비용자성사업비	13	3	15	3	15	3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564	97	564	97	565	97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노인복지기금은 진천군 노인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노인대학운영, 자원봉사클럽육성, 장기바둑대회, 노인전통공예솜씨대회, 지도자교육, 어린이 보호활동 등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존치되어 노인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조직내 지도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에 이른 노인들에게 다양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지원 및 참여기회를 제공하며 타 사업과 중복됨이 없이 차별화된 사업을 탄력성 있게 추진하겠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14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 근거 :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함
- 설치 연도 : 2002년도
 - 조례제정 : 2002. 02. 23. 조례 제1768호
 - 조례개정 : 2006. 08. 09. 조례 제1927호
 - 2008. 07. 14. 조례 제2017호
 - 2009. 07. 30. 조례 제2049호
 - 2010. 12. 16. 조례 제212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 2011. 03. 15. 조례 제2126호
 - 2011. 09. 26. 조례 제2168호<진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89	80	351	7	8	-1	350	

II. 분석결과

1. 총 평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진천군의 3,8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다른 장애우들과 교류하고 친교의 장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단체의 활성화 및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 신체적·정식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즐거운 야외활동 및 경기방식의 진행으로 장애우들 간의 합동심을 발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단결의 기회를 제공하므로 기금존치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8	100	8	8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야외활동의 기회 및 만남의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한 자리에 모여 즐길 수 있는 체육대회의 장을 마련하여 친교의 시간을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를 체험하고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100%
'13년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8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진천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하여 장애인의 야외활동을 도모하고 장애우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서로 간에 동지의식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2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	8백만원	야외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심신수련 및 교우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탄력적인 사업수행과 신축성을 위하여 필요함	상
합계	8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장애인복지기금의 설치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의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은 출연금 300백만원, 발생이자의 10% 및 집행잔액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및 장애인 야외 활동과 친교의 장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1		'12		'13	
수 입	합 계	355	%	357	%	35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346	97	347	97	350	97
	예수금						
	이자수입	9	3	10	3	8	3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55	%	358	%	358	%
	비용자성사업비	8	2	8	2	8	2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347	98	350	98	350	98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책임실천과 장애인단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예전의 선천적 장애가 많았던 시대에서 환경 등의 영향으로 후천적인 장애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인권 및 접근권 등의 권리가 요구 되고 있는 상황에서
-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해당없음.

'14년도 여성발전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기금의 설치 등)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진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설치연도 : 2001. 07. 10.
 - 조례제정 : 2000. 08. 08.(조례 제1705호 : 진천군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례개정 : 2006. 04. 12.(조례 제1907호 : 진천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
 - 2008. 07. 14.(조례 제2017호)
 - 2009. 07. 30.(조례 제2049호)
 - 2009. 11. 19.(조례 제2060호)
 - 2010. 12. 16.(조례 제2120호)
 - 2011. 09. 26.(조례 제2168호)
 - 2012. 11. 12(조례 제2232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61	9	442	61	9	52	494	

II. 분석결과

1. 총 평

- 제3기 진천군 여성대학 운영 지원 : 5백만원
- 제11회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 : 4백만원
- 여성대학 운영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장을 마련
-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를 통해 건전한 여성단체 육성 및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단체 간에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형성을 통한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기여
-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관리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의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고 있음.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기금사업을 운용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의 계속적 추진 및 여성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	8	100	9	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여성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창의적 소통법, 이미지 메이킹, 사회복지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한 지도자 리더십 함양으로 여성단체회원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단체 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형성을 통해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60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제3회

진천군 여성대학”을 운영하였고, 여성인적자원 부족문제 해결과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를 해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85%가 이번 여성대학 교육이 향후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교육 전 기대했던 내용과 실제로 받아본 교육의 느낌을 물어본 질문에도 90%가 좋았다고 답하는 등 여성대학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계속 운영하자는 건의가 많았음.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하여 여성단체 회원 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만남의 장 마련으로 여성단체 간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중심단체로서의 기능강화와 여성권익 증진에 기여함. 한마음 큰잔치에 참여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5백만원, 60명) ○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3백만원,500부)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5백만원, 63명) ○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3백만원,500부)	100%
'13년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5백만원, 60명) ○ 제11회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4백만원,300명)	○ 제2기 진천군 여성대학 (5백만원, 60명) ○ 제11회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4백만원,300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여성발전기본법, 진천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진천군의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	- 제2회 진천군 여성대학 운영 - 여성단체 활동책자 제작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진천군 여성대학의 운영과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를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특히 여성대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교육, 창의적 소통법, 이미지 메이킹, 사회복지 등 다양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인재 양성에 기여하였음. 또한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를 통해 여성단체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단체 간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형성을 통한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음	
	'13	없음	
	'14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음	
기 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3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① 여성단체 한마음 큰잔치	4,000천원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적합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형태로 유지 및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	상
① 여성단체 활동 책자 제작	3,000천원 (12년 사업비임)	여성단체의 홍보 및 적극적인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기금에서 신축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함	상
합계	7,000천원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근거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은 출연금을 기본으로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익 10%로 충당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단체 및 여성관련 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345	%	398	%	451	%	
	출연금			50	13	50	11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336	97	337	84	390	86	
	예수금							
	이자수입	9	3	11	3	11	2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345	%	398	%	451	%	
	고유목적사업비	8	3	8	2	9	2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37	97	390	98	442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14년도 자활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 설치연도
 - 조례제정 : 2011.06.30
 - 조례개정 : 2012.02.02/ 2014.05.02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90	4	482	58	14	44	526	

II. 분석결과

1. 총 평

- 탈수급자의 개인부담 사회보험료 50%지원(1,307천원/ 6명) 및 일하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사업) 참여자의 본인저축액 6개월분을 지원(1,200천원/2명)하는 사업추진
-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탈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설치되어 조성·운용되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 지원을 위해 존치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1	73	4	2	5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자활기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자립·자활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18명에 4백만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8명에 1백만원을 지원함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탈수급 후 사회보험료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산형성에 기여함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4백만원, 2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11백만원, 19명)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1백만원, 10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10백만원, 18명)	73%
'13년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2백만원, 16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1백만원, 2명)	○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1백만원, 6명)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1백만원, 2명)	5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 일을 통한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자활기금 사업을 통해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및 일하는 수급자의 자
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참여자의 본인저축액의 일부를 지원
하여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주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 추
진을 위한 재원으로써의 목적을 달성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지원	1백만원	해당사업은 지원대상자수 등의 변동 여지가 있어 신 축적인 집행이 필요한바 기 금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타 당함	중
② 일하는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본인저축액 지원	1백만원		상
합 계	2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일반회계 전입금(50백만원), 자활근로사업 발생 수익금(32백만원), 이자수입(8백만원)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 백만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해당없음 / %	326 / %	90 / %	
	출연금		50 / 15	50 / 56	
	보조금		6 / 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2 / 1	8 / 9	
	기타수입		268 / 82	32 / 35	
지 출	합 계		326 / %	484 / %	
	고유목적사업비		11 / 3	2 / 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315 / 97	482 / 99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임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해당없음

'14년도 식품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함

- 설치연도: 2001. 09. 07.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2000. 12. 30 (조례 제1720호)
- 개정: 2002. 09. 11 (조례 제1781호)
- 2006. 04. 12 (조례 제1910호)
- 2009. 07. 30 (조례 제2049호)
- 2010. 12. 16 (조례 제2120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20,486	560	219,368	30,500	560	29,940	249,308	

II.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에 의거 진천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보고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진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충청북도 보건위생과-28556(2006.12.12)호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기금보유에 따른 사용기준」에 따라 2014년 4월 현재 기금 2억원 이상 보유하여, 최소보유액(2억원)은 정기에금으로 예치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을 향후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560	560	100	560	56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100%
'13년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 예산 560천원 - 상반기(4명), 하반기(4명)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식품위생법 제89조 인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 -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2006년 충청북도 「식품진흥기금 운용안내서」 및 「식품진흥기금 성과 분석 결과」에 따라 기금 최저보유금액(2억원)에 달성할 때까지 기금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수입 전액을 예치하였음
- 2014년 하반기부터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해당없음	
	'13	해당없음	
	'14	해당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기금이 2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 기금수입을 전액 예치하도록 권고함	충청북도 보건위생과 -28556 (2006.12.12)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업명	'13년 사업비	이유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해당 없음”	2013년 사업내역 없음	상중하
합계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분	사업명	금액	비고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 달성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단위:천원)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137,561	%	200,002	%	219,928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65,394	47.5	137,071	68.5	199,442	90.7	
	예수금							
	이자수입	527	0.4	4,053	2	5,546	2.5	
	기타수입	71,640	52.1	58,878	29.5	14,940	6.8	과징금
지 출	합 계	137,561	%	200,002	%	219,928	%	
	고유목적사업비	490	0.4	560	0.3	560	0.3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37,071	99.6	199,442	99.7	219,368	99.7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그 존치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식품 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음식문화수준 향상 및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14년도 재난관리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진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 조례

- 설치 및 조성목적 :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

- 설치 연도 : 1998. 8. 23(조례제정일:1998. 5. 27.)

- .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통폐합 : 2004. 12. 21

- . 진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2005. 1. 14 조례 제1869호]

- . 개정 2005. 6. 8 조례 제1875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06. 4. 12 조례 제1915호

- . 개정 2007. 2. 14 조례 제195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07. 6. 21 조례 제1960호

- . 개정 2008. 1. 7 조례 제1984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10. 12. 16 조례 제2120호<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 개정 2012. 2. 2 조례 제2193호

- . 개정 2012. 11. 12 조례 제2236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76	420	1,889	582	481	100	1,989	

II.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 상습 수해지역의 피해예방과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함에 주 목적이 있음.
-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본 기금사업은 안전 및 복구관련 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재난관리 부문은 사전예방차원의 사업으로써 안전점검이나 사후복구 부문과 별개로 판단하기에 사전예방사업의 중요성만큼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충당되며 재원 조성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01	701	100	420	4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 본 기금사업은 재해발생 위험이 높아 주민의 인명피해 우려가 있던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재해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함.

- 재난관리기금사업은 긴급한 구간의 신규가 아닌 보수보강 위주의 사업선정이 중요하며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보다 많은 주민에게 재해예방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하고자 함.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랙터부착용제설기구입 - 35백만원, 16EA ○원격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 - 42백만원, 2EA ○장양천 노후시설물 긴급 보수사업 - 200백만원, L=500m ○재난안전네트워크 홍보물제작 - 3백만원, 300개 ○장양교 보수보강공사 - 129백만원, L=120m ○장관교 보수보강공사 - 79백만원, L=120m ○마두마을 암거설치공사 - 33백만원, 암거1식 ○송림지구 노후제방 보수공사 - 60백만원, L=70m ○신촌소하천 제방보수 공사 - 80백만원, L=150m ○덕산한천 노후제방 보수공사 - 40백만원, L=8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랙터부착용제설기구입 - 35백만원, 16EA ○원격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 - 42백만원, 2EA ○장양천 노후시설물 긴급 보수사업 - 200백만원, L=500m ○재난안전네트워크 홍보물 제작 - 3백만원, 300개 ○장양교 보수보강공사 - 129백만원, L=120m ○장관교 보수보강공사 - 79백만원, L=120m ○마두마을 암거설치공사 - 33백만원, 암거1식 ○송림지구 노후제방 보수공사 - 60백만원, L=70m ○신촌소하천 제방보수 공사 - 80백만원, L=150m ○덕산한천 노후제방 보수공사 - 40백만원, L=80m 	100%
'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제설기 구입 - 56백만원, 7EA ○트랙터부착용제설기구입 - 92백만원, 41EA ○자동경보 강우량계 구입 - 50백만원, 8EA ○원격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 - 39백만원, 2EA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구축사업 - 136백만원, 4개소 ○제설제 구입사업 - 47백만원, 염화칼슘60톤,소금250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용 제설기 구입 - 56백만원, 7EA ○트랙터부착용제설기구입 - 92백만원, 41EA ○자동경보 강우량계 구입 - 50백만원, 8EA ○원격재난 무선방송 시스템 사업 - 39백만원, 2EA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구축사업 - 136백만원, 4개소 ○제설제 구입사업 - 47백만원, 염화칼슘60톤,소금250톤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진천군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 는 경비충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격재난무선방송시스템구축 기금사업(4EA) - 특정관리대상교량보수 기금사업 (당골교, 근어교) ○ 2012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용 제설기구입 기금사업 16EA - 원격재난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기금사업(2EA) - 교량보수 기금사업 2개소 - 하천제방 보수 기금사업 4개소 ○ 2013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랙터 및 차량용 제설기구입 기금사업 48EA(트랙터41,차량용7) - 재난예경보 사업 3건 (자동경보 강우량계, 지진가속도, 원격무선재난방송시스템) - 제설제 구입사업 1건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재난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 자동경보 강우량계 구입 및 제설기 보급사업으로 재난재해를 예방함.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특이사항 없음	
	'13	특이사항 없음	
	'14	특이사항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특이사항 없음	
기 타		특이사항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표 2-3)

(표 2-3)

사 업 명	'13년 사업비	이 유	불가피성 정도
① 차량용 제설기 구입 사업	56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 여 재난예방	상
②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사업	92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 강설시 제설기를 마을에 공급하여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여 재난예방	상
③ 자동경보 강우량계 구입사업	50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 자동경보 강우량계 설치로 강우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재해사전예방	상
④ 원격무선재난방송 시스템 구축사업	39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 자연재해취약마을 위주로 방 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재해사전예방	상
⑤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설치사업	136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을 지진정보 제공 및 재해사전 예방	상
⑥ 제설제 구입사업	47백만원	신축성 집행, 적립성 - 강설시 신속히 제설작업을 하여 재난예방	상
합 계	420백만원		

4. 사업의 중복성 ·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 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해당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 없음		
타 기금	해당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 재원은 관련법에 따른 군비 출연금과 도비보조금,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3년 재원규모는 법적 출연금 417백만원, 도비보조금 75백만원 이자수입 84백만원의 자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원격재난 무선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설치사업, 자동경보 강우량계 설치사업 등 재난예방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
- 기금의 수입재원이 기금설치목적에 달성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표 4-1)

(표 4-1)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2,096	%	2,434	%	2,309	%	
	출연금	313	14.9	363	14.9	417	18.2	
	보조금	88	4.2	170	6.9	75	3.2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1,634	77.9	1,870	76.8	1,733	75	
	예수금							
	이자수입	60	2.9	31	1.4	84	3.6	
	기타수입	0.5	0.1					
지 출	합 계	2,096	%	2,434	%	2,309	%	
	고유목적사업비	225	10.7	701	28.8	420	18.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1,871	89.3	1,733	71.2	1,889	81.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0.02	0.01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전대비가 강화되는 추세에 본 기금이 사전재해 예방사업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급한 자연재난예방에 필요한 사업을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 추진하고자 함.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되어 지금까지 누적되어 적립됨에 따라 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짐. 기금을 적립하는 한도액을 설정하여 잔액이 한도액 이상이면 더 이상 기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 방안 마련을 건의
 - 장기적으로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금사용에 제한이 있으므로 필요시 사용용도에 대한 확대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건의

'14년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성과분석 보고서

I.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농촌진흥법 제5조
-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 설치 및 조성 목적

- 농업인 학습단체의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 설치년도 : 1983년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 제정 : 1996. 6. 17. 조례 제1507호
- 개정 : 1996. 11. 8. 조례 제1524호
- 1997. 12. 31. 조례 제1585호
-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 1999. 1. 9. 조례 제1635호
- 2008. 7. 14. 조례 제2017호
- 2009. 7. 30. 조례 제2049호

○ 기금조성현황

(단위 : 백만원)

'13년도 운용현황		'13년말 조성액	'14년 운용계획			'14년도말 추정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5	1	4	0	0	0	기금폐지	

II. 분석결과

1. 총 평

- 농민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4-H후원회)의 기금조성으로4 건전하고 생산적인 농촌의 후계세대를 육성하고 복지농촌을 건설할 유능한 농촌전문인력육성을 목적으로 함
- 농업과 생활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추진,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농촌 후계세대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 환경개선과 환경보전 선도, 선진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실시, 조직활성화를 위한 행사추진 등의 농촌에 필요한 사업을 매년 추진하였으며

- 2013. 5. 9일자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2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5	14	93	16	0.8	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4-H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5백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및 교육(1백만원)	○4-H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4백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및 교육(1백만원)	93%
'13년	○4-H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5백만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및 교육(4백만원) ○농업경영인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및 교육(3백만원) ○여성농업인 현지연찬 및 교육(1백만원)	○4-H단체 현지연찬 및 교육(400천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및 교육(200천원) ○생활개선회 현지연찬 및 교육(200천원)	5%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표 2-1)

(표 2-1)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농촌진흥법 제5조 및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	○ 4H 후원회 지원 ○ 농촌지도자회 지원 ○ 생활개선회 지원 ○ 농업경영인 지원 ○ 여성농업인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복지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농업·농촌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표 2-2)

(표 2-2)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	없음	
	'13	폐지기금의 보유액을 일반회계로 전출 처리	2013.7.19. 세입처리 완료
	'14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 권고	없음		
기 타	2013. 5. 9일 기금조례 폐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 2013. 5. 9.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표 3-1>

<표 3-1>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기 금	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없음		
타 기금	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특이사항 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설치는 농촌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재원은 출연금을 기본으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의 회비, 기금적립금의 이자수익 10%, 집행잔액이나 정산반환금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향상을 위한 각종 학습활동 전개 등의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음
- 기금의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표 4-1)

(표 4-1)

구 분		'11		'12		'13		비고
수 입	합 계	614	%	618	%	609	%	
	출연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상환금							
	예치금회수	597	97	600	97	604	99	
	예수금							
	이자수입	17	3	18	3	5	1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614	%	618	%	609	%	
	고유목적사업비	14	2	14	2	1	1	
	융자금							
	인건비							
	물건비							
	예탁금							
	예치금	600	98	604	98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지출					608	99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출연금/합계)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 기금 수익금으로 고유목적의 사업을 하기엔 기금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13. 5. 9일자로 [진천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농촌지역 사회발전과 어려운 농촌 현실을 위한 선도 조직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농업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사업을 탄력있게 추진하고자 함.